

2017년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Contents

- I ▶ 개 요**
- II ▶ 총 칙**
- III ▶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장)
- IV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장)
- V ▶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 5장, 제 6장)

I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정책

- 개인정보보호 원칙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의무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규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준수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제한
 -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 의무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방침 공개
- 유출 시 조치 해야 할 사항
 -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권리 보장 및 구제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
 - 조정의 신청, 절차 등
-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
- 모든 사업자, 개인 등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 적용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

유출, 침해의 초 대량화

개인정보 대량집적 추세
→ 유출사고 초 대량화 (1~2천만건)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 위험

개인정보 취급분야 확대

(기존)정보통신업 + {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생 가능

새로운 기술 환경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정보 주체의 인식 변화

집단소송, 분쟁조정, 침해신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적 대응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Ⅱ 총 칙



개인정보 정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주민번호, 영상정보, 문자, 음성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이름 + 전화번호
이름 + e-mail
전화번호 + e-mail { 홍길동
+
010-XXXX-0000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의 종류

일반적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름, 주소

통신·위치 정보

- 통화, IP주소
- **G P S** 등

사회적 정보

- 교육 정보
- 근로 정보
- 자격 정보



정신적 정보

- 기호, 성향
- 신념, 사상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의료, 건강정보

재산적 정보

- 개인 금융정보
- 개인 신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

[참고]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하루 동안 **홍길동씨**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출근
(교통카드, CCTV)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오늘의 이슈?
(SNS)

➔ ID, PW, 사진, 동영상, 빅데이터

사무실 출입
(전자카드)



➔ 이름, 사번

일 하자!
(그룹웨어)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업체와 회의
(명함교환)

➔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점심식사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 이름, 신용카드, 연락처, 위치정보

[참고]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하루 동안 **홍길동씨**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주가가 올랐나?
(스마트폰)



➡ ID, PW, 이름, 계좌

어머님 생신?!
(온라인 쇼핑)



➡ ID, 신용카드, 주소, 연락처

병원에 잠깐...
(의료기관)



➡ 건강보험번호, 이름, 병명, 진료기록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아파트출입카드, CCTV)



➡ 이름, 동·호수, 연락처

퇴근 후
동창회 관리
(회원명부)



➡ 이름, 연락처, 전공, 졸업 년도

모든 생활에
개인정보 연관

[참고] 용어 정리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이용자뿐 아니라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됨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초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참고] 용어 정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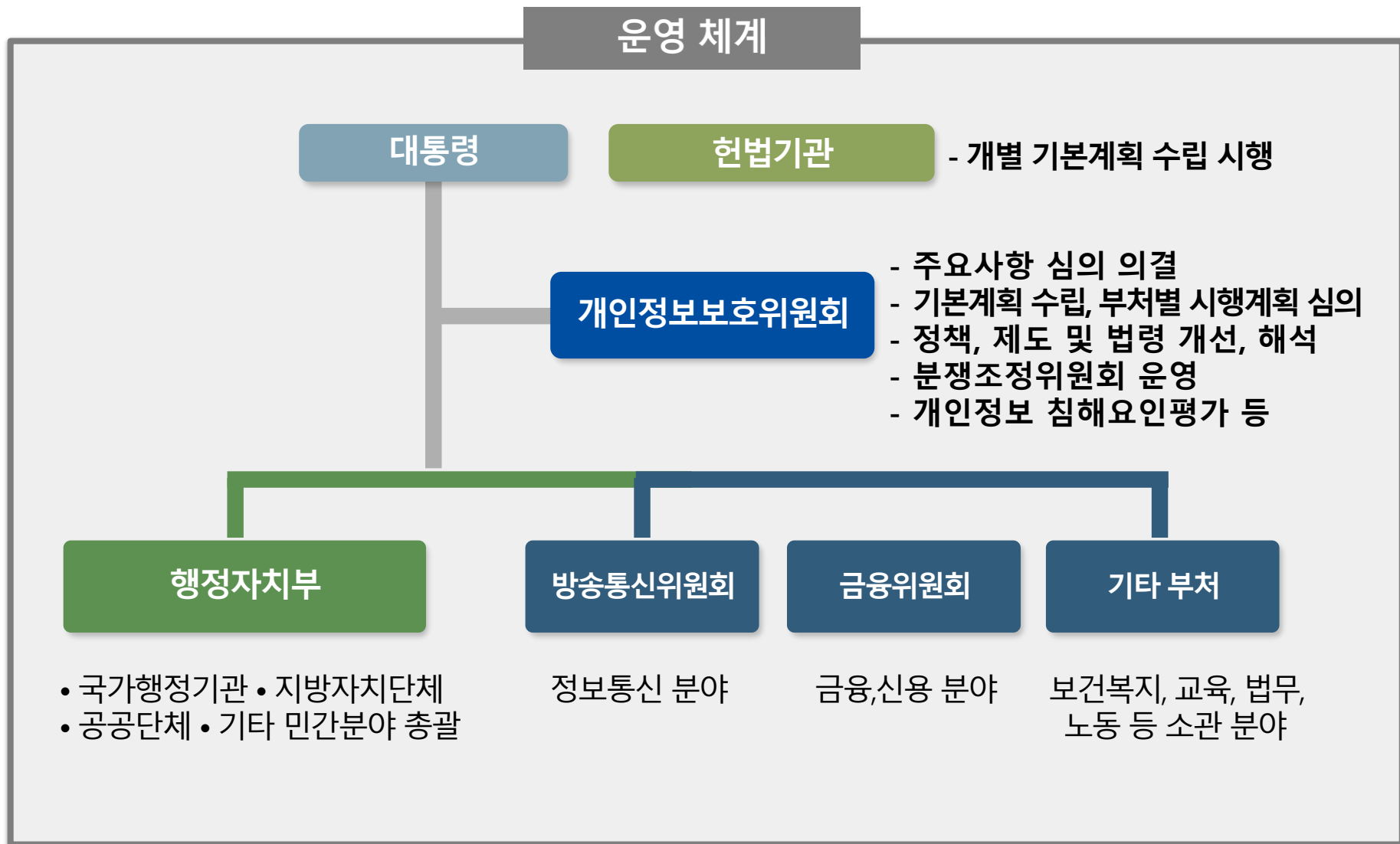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사본의 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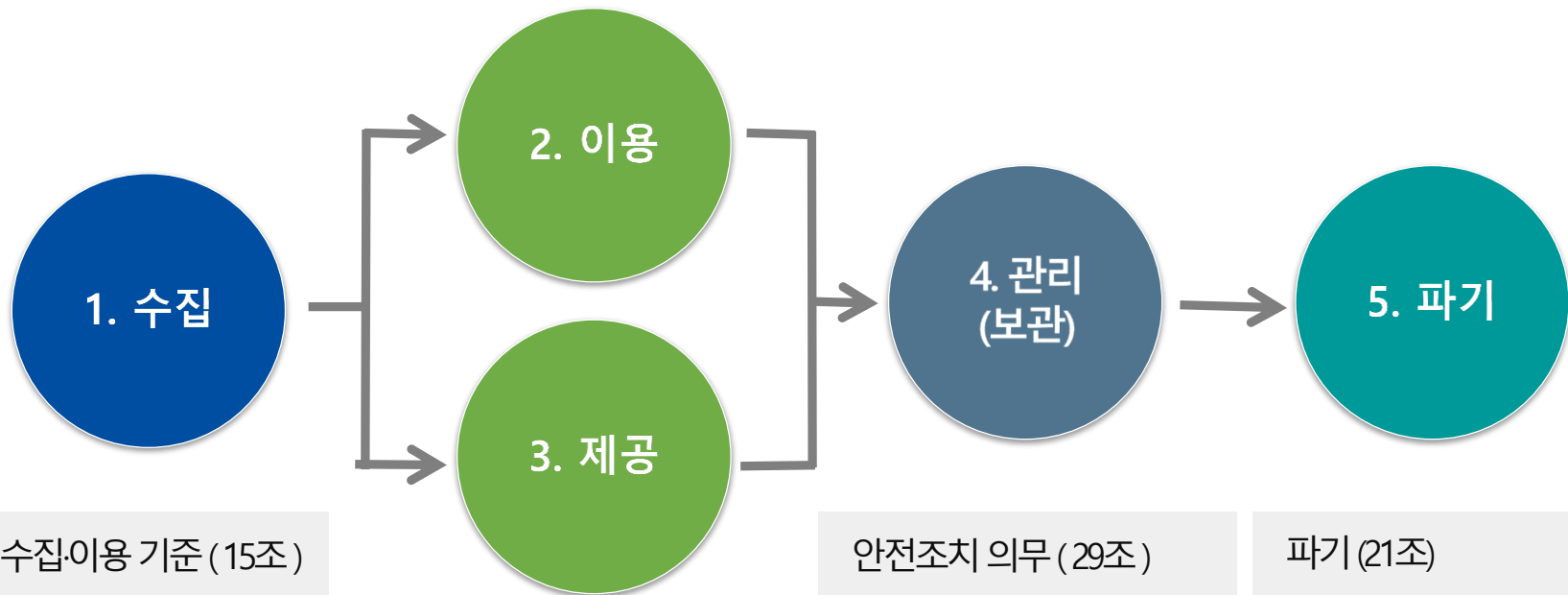


Ⅲ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수집·이용 기준 (15조)

최소 수집 (16조)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22조)

- 처리제한 -
민감정보 (23조),
고유식별정보 (24조)
주민번호 (24조의 2)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18조)

제3자 제공 (17조)

처리위탁 (26조)

영업양도양수 (27조)
(민간)

국외이전 (17조)

안전조치 의무 (29조)

처리방침 (30조)
보호책임자 (31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3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32조)
(공공기관)

파기 (21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제15조)

목적 내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 ①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 항목
- ③ 보유·이용 기간
- ④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 5.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 Q.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Q. 과태료 변경 등 계약증빙을 위해 임차인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있나요?
- Q. 사업자가 원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렌터카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 Q. 임차인이 불법으로 차량매각 내지 제3자에게 차량 점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 위치정보 활용해도 되나요?
- Q. 장마기, 혹설기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 Q. 임차인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내 제 3자 제공
(법 제17조)

목적 외 이용·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을 때 고지의무 사항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내 제 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법 제18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만 해당

5.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능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Q.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임차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참고] 목적 외 제 3자 제공 요구 법률 규정 예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목적 외 이용 · 제공(제18조)에 따른 이행사항

제공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외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요청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공공기관 이행사항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참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 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제 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법 제20조제1항)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 단.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다면 예외 가능

- 고지 대상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지 방법

-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방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를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 고지하였다는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을 개인정보 파기할 때까지 보관 관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는 방법 (제 22조)

-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
 -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해야 함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 23조, 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함(제24조2)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제 24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

대 상

- 공공기관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주 기

2년마다 1회 이상

방 법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제 24조의2)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

01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02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

- 100만 명 미만의 주민번호 보관
'16.12.31.까지 암호화

주민번호 보관
100만 명

-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 보관
'17.12.31.까지 암호화

03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예) I - PIN,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 25조)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원칙적 금지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설치·운영 금지 장소

- 목욕탕·화장실·발한실(發汗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은 설치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25조)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CCTV설치안내

본()는
_____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	(- -)

CCTV 설치안내 

본()는
_____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 치 장 소 : _____

· 촬 영 범 위 : _____

· 촬 영 시 간 : _____

· 관리책임자 : _____
(연락처)

1 안내판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2 안내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Q. 차량 파손, 법규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동의 없이 블랙박스상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나요?

Q. 블랙박스상 영상을 임차인 동의 없이 사업자가 보관할 수 있나요?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제26조)

- 처리위탁은 문서에 의해서 해야 함 (제1항)

- 문서에 포함될 내용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④ 재위탁 제한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의 감독
 -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홍보, 마케팅 업무 위탁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고지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감독
- 수탁자의 이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참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vs 위탁

	제 3자 제공 (법 제17조, 제18조)	위탁 (법 제26조)
처리 목적	제공받는 자의 이익 / 목적	제공하는 자의 이익 / 목적
관리 범위	제공받는 자의 책임	제공하는 자의 책임
예시	•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 • 감사기관(감사 수행 목적) 등에 감사자료로 제출 • 마트 이벤트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마케팅에 제공	•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 직원 정보 제공 • 직원 교육을 위해 교육 위탁업체에 직원 명단 제공 • SMS를 통한 홍보를 위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문자발송 업체에 전달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Q. 사업자가 상품화된 전산프로그램에 임차인의 개인정보 등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위탁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제 21조)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보존 가능

개인정보 파기할 때에는 **복구 ·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파기 대상 개인정보의 보존 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전부 파기

-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일부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 Q. 대여계약을 오프라인상으로 보관·관리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있나요?
- Q.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 회원관리를 엑셀 등 별도 문서 파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있나요?
- Q. 대여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태료 변경 등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 Q. 대여계약 종료 후 세무증빙 등을 위해 대여계약을 파괴하지 않고 보관(5년)할 수 있나요?

그 외 Q&A

Q.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회원가입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게시하고 기술적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 웹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건적문의 및 회신을 하는 경우(의뢰자가 단순히 성명과 연락처만 제공)에도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IV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 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담당자 연락처, 위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 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

업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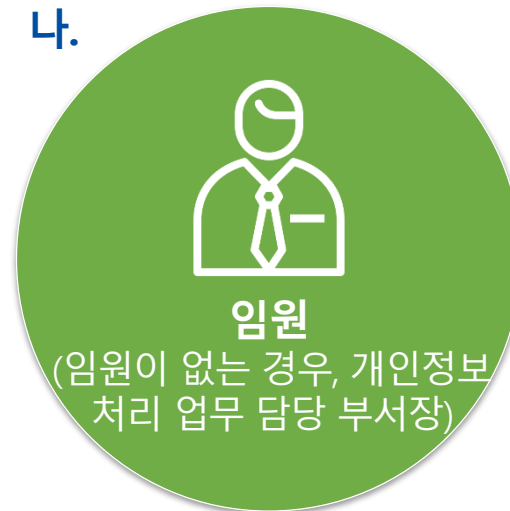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시행, 필요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서는 안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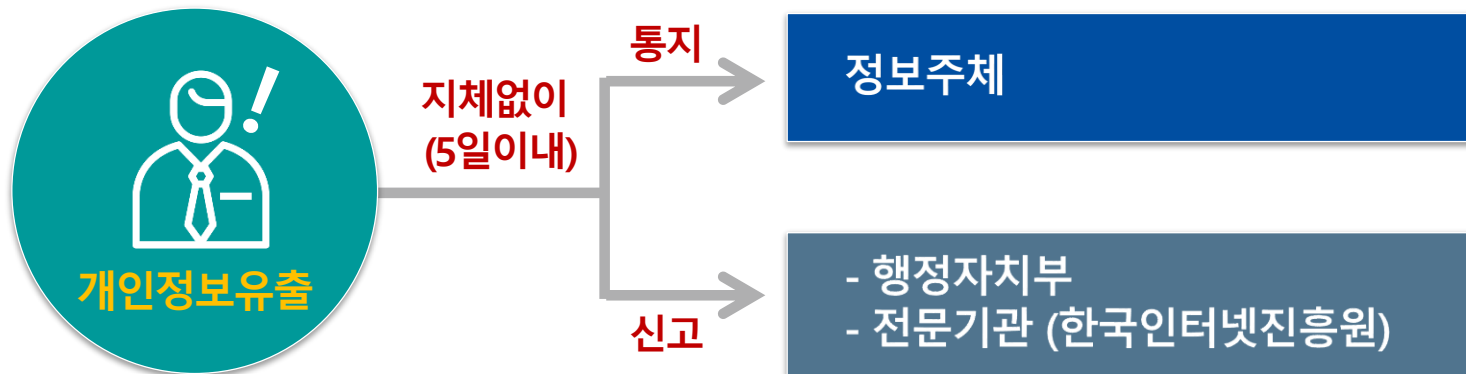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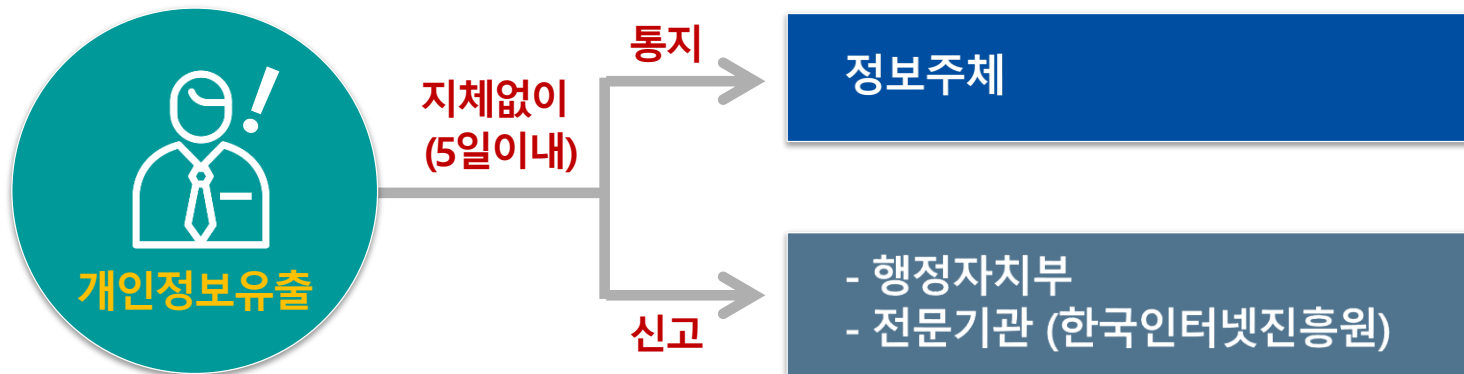
통지방법

신고방법

통지대상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사실을 통지
통지시기	5일 이내
통지방법	개별 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통지내용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통지방법

신고방법

신고대상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기관	행정자치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시기	5일 이내
신고방법	전화, 전자우편, 팩스
신고내용	통지내용,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

- PIMS 인증의 기대효과
 - 체계적·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가능
 - 경영진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 대응 가능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고객의 신뢰 향상
- 인증전문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신청기관 유형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 유형으로 인증
- 인증심사 기준 : 3개 분야 86개 항목
 - ※ 인증기준 방법·절차 등은 고시 참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제6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제 35조 ~ 제 39조의2)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 가능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해 열람요구 가능

열람 요구시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열람요청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연기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열람)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



PRIVACY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께 합니다.
정보통신강국이 미래를 개척하는 선봉이 되고자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권고
- 행정처분 의뢰
- 수사 의뢰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개인정보분쟁조정



- 제도개선권고
- 손해배상 권고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관련근거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9조)와 법정 손해배상제도(제39조의2)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 손해배상제도
적용 요건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기업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입증 책임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구제 범위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배상 규모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적용시기	2016년 7월 25일 이후 유출사고	

감사합니다

